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여부

1 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1조에서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질의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 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2.5. 토지정책과-6132]